

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
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동의의 건



의회운영위원회

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1. 폐지이유

- 「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기존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」은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」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

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의원(의원연구단체를 포함한다)의 연구활동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입법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① 이 규칙에서 “연구의원”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란 의회발전 및 도정시책의 연구,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의원을 말한다.

② “의원연구단체”(이하 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란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등록)① 의원 및 연구단체가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 개인 연구활동 등록은 연 1회에 한한다.

③ 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보좌한다.

④ 의원 또는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가 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)① 의원 및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서 의원연구활동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제5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
2. 연구활동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
3.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연구단체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활동계획 또는 연구활동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.

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원 및 연구단체에 통지한다.

제7조(수당)의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활동 기간)의원 또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 지원)① 의장은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,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.

제10조(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 등)① 의원 또는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수용비, 공공요금, 용역비, 임차료, 급량비, 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9조의 한도액을 초

과할 수 없다.

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가 연구활동계획 승인의결을 통보 한 때에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의 50%범위 안에서 지급하고, 잔액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.

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

2.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3. 연구활동결과보고서가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한 때

4.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였을 때

5.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제11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 등)①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또는 연구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및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해당의원 및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해당연도 12월 10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첨부하여 15부를 제출한다.

③ 연구활동비정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별표 1의 연구활동비 정산기

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
제13조(세부사항)이 규칙 이외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